

지방세법상 종교단체 비과세 · 감면의 연구

박상봉*

〈요 약〉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재산과 관련한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 · 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한 지방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지방세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의 비과세 ·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핵심주제어 : 지방세, 종교단체, 비과세, 감면

I. 서 론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는 1960년대 지방세의 중과제도와 함께 도입된 조세정책으로서 이는 일정대상에 납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직접 보조금과 같은 정

논문접수일: 2012년 08월 01일 수정일: 2012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09일

*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parksb@deu.ac.kr.

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부에만 조세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을 침해하고,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국가정책목적에 의해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필요와 자율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과세·감면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다소 불합리한 점이 존재 한다. 특히, 비영리법인 중 정부의 통계자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체가 종교단체 인 점을 고려하여(2008. 12. 10 국민일보) 본 연구에서는 종교단체에 초점을 둔다.

한국의 개신교회가 급성장하면서 한 교회의 신도수가 10만 명을 넘는 교회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 교회의 연간 재정수입규모는 수백억 원을 웃돌고 있고, 교세확장에 따라 소요건축비의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종교단체 건물의 신축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종교단체의 납세의식이나 담세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2006년, 국세청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의논하면서 논란이 야기되었고, 지금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대부분 국가는 종교인 역시 일반인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한해 부가세, 양도세, 취득세 면제 등 비영리법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종교인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역시 종교법인법 으로 종교단체에 특정 세목의 비과세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종교인 개인은 예외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 있어 종교인에 대한 면제 및 감면조항은 없다. 종교인 과세를 찬성 쪽을 예로 들면 천주교 사제의 경우, 교구나 분당으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과세를 추진할 때 과세표준기준을 만들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천주교 사제들은 1990년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중 면세대상자가 839만 명과 비교할 때에 목회자의 상당수가 소득세 면세점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징세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 운영자금(2006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2006년 운영자금이 각각 3조1760억원(개신교), 4610억(불교), 3390억원(천주교)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종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소극적인 조세관리체제의 혜택을 누려왔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로는 김명돌(2009)는 종교단체에 조세제도를 문헌적으로 연구하고 종교단체에 관련한 비과세등 세제지원내용과 협력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정대진(2006)는 한국의 조세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와같이 종교단체의 조세관련 선행연구의 부족, 종교단체에 대한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실증

적분석 보다는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국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논문은 종교단체에 관한 지방세체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해 주로 종교단체에 대한 현행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비영리법인 비과세·감면의 현황

비과세·감면제도를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을 배제하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조건에 위배될 경우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세권중 부과권을 유보하는 의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법상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권 중 징수권을 유보하는 조치를 말한다.¹⁾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어 적용되었는데 비과세제도는 지방세법상 규정되어 있고 감면제도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형태로 도입된 방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입된 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2. 비과세·감면제도 비교 및 종류

지방세법상 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는 <표 1>과 같으며,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의 내용은 <표 2>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 지방세 비과세 제도와 감면제도의 비교

구 분		비과세제도	감면제도
공통점	납세의무	납세의무불성립	납세의무성립
	입법목적	사전적·입법정책고려	사후적·입법정책고려
차이점	입법형식	법률	법률·조례
	절차적용원리	납세의무성립 부인	징수권 부인
	절차의 근거	• 부과권 회복규정 필요	• 징수권 회복규정 불필요

1) 김완석·송쌍준·박훈·유태현,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5, p.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권 회복규정이 없는 경우는 부과권 행사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처리시 간접적으로 부과권 존재 확인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권 회복규정이 있는 경우 ① 신고납부세목 사업 착수 유예기간부터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 부과권 회복 ② 부과고지세목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부과권 제척기간내 부과권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규정 있는 경우 추정사유발생일로부터 제척기간 내 부과권 행사 • 추정규정이 없는 경우 감면시점부터 제척기간 내 부과권 행사

<표 2> 지방세법 비과세·감면 요약

종류	비과세·감면 내역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로 취득가액의 2%가 부과되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등록세	제사, 종교 등 종교사업을 목적(종교단체의 고유의 사업)으로 하는 종교단체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자선, 구제사업 등)하는 재산 ²⁾
농업소득세	학교·고아원·양로원·수녀원·사찰·교회 등이 학술·시험·학습 또는 자가소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업소득
면허세	종교, 예배 등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사업소세	제사·학술·자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게는 사업소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지역개발세	생산된 전력 등을 대통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례에 의한 감면	공익 기타의 사유로 감면의 필요성을 이어나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거나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감면해야 하지만 지방세법에 규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3. 종교시설에 대한 비과세·감면 현황 및 문제점

3.1 종교시설 비과세·감면 현황

공공법인의 감면대상별 감면액을 <표 3>에서 살펴보면, 전체 3조7385억원 중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면이 3조 1357억원으로 전체 83.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0.6%), 사회복지단체(0.1%), 영

2) 비과세된 등록세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가 부가된다.

- 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 ② 등기·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③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유아 보육시설(0.9%) 등 실질적인 사회저소득층을 위한 감면수준보다 종교 및 제사단체의 감면수준(5.4%)이 보다 높고, <표 4>에 따라 감면수준이 감소가 되는 년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속적이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2009년 공공법인의 대상별 비과세·감면액 비중

(단위: 억원)

비과세 감면 대상	비과세·감면액	비중(%)
계	3조7385	100
종교단체	2,017	5.4
제사단체	118	0.3
교육단체	1,245	3.3
사회복지법인	211	0.6
사회복지단체,나 관리협회	31	0.1
정 당	1	-
영유아보육시설	324	0.9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94	0.3
농어민지원 감면	1,987	5.3
국민생활안정감면	3조1357	83.9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10

<표 4> 종교단체 감면 현황(2007~2009)

(단위: 억원)

연도별 시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전 국	155,494	△7	134,130	△14	213,629	△59
서 울	15,639	▽1	5,581	△65	72,250	△123
부 산	14,188	△44	7,374	△49	10,902	△33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10

3.2 지방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종교 및 제사 단체의 비과세·감면은 대다수가 주로 재산거래 및 보유 관련 세목에 집중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비과세·감면액 가운데 각 지방세목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 5>를 통해 살펴보면 등록세(51%), 취득세(42%), 재산세(6%)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항목들은 지자체의 주요 세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과세·감면액이 늘어날수록 지방세수의 침식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목별 규정을 살펴보면 규정 자체가 포괄적이라, 주된 사업목적의 해당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점이 많다.

<표 5> 2008년 세목별 비과세·감면 규정과 비중

세 목	규 정	비중(%)
취득세	주된 사업목적 부동산 비과세	42
등록세	주된 사업목적 부동산 비과세	51
재산세	주된 사업에 직접사용부동산 비과세	6
균등할주민세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업장	-
면허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면허	-
농업소득세	자가소비용 경작 농업소득	-
사업소세	주된 사업목적 경우 비과세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9

3.3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감면 문제점

3.3.1 지방재정확충을 저해

경제발전,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종교단체는 신도 수, 연간수입 등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들의 규모가 날로 커져 종교용 부동산의 취득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세의 주요 세목이 재산 관련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지방세수를 잠식당하고 있다. <표 6> 같이 조세수입의 감소는 지방자치체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표 6>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 추세(2007~2009)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비과세·감면액(A)	8조882(19.5%)	11조3,012(26.3%)	12조8,146(28.1%)
비과세	2조 2,779(5.5%)	4조8.892(11.4%)	5조 1.565(11.3%)
감면	5조 8.103(14.0%)	6조 4.030(14.9%)	7조 6.581(16.8%)
지방세 징수액(B)	41조 2.937(100%)	42조 8.519(100%)	45조 4.797(100%)
비과세·감면액(A/(A+B))	16.4%	20.9%	22.0%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10

3.3.2 종교단체의 공익성 결여

공익이란 사회일반의 이익, 다시 말하면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말한다. 오직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공익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종교단체는 본래적으로는 특정인인 신자의 집단이 그 기초가 되어 조직된 것이기 때문에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익의 대상은 신자인 특정 개인

또는 집단으로 공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종교단체에 있어서 ‘공익’이라 하여도 신자의 내심에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신생활의 정화 등을 통해 매우 소극적으로 사회의 안녕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다른 공익 법인과 같이 적극적으로 공익의 증진을 도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예로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의 지출비중을 분석하여 보면 행정비, 종교행사비 등의 경직적인 성격의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장학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단체를 다소 제한적인 공익성을 전제로 비영리법인의 범주에 소속시켜 각종 조세상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여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함께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3.3 비과세혜택의 수평적 불균형 발생

현행 지방세 규정은 수익사업의 범위와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만을 규정³⁾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비과세대상의 판단기준으로 사업종류 및 비영리사업자인지 아닌지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의할 경우, 실제로 비과세의 혜택이 필요한 단체의 경우는 비과세되지 않고 오히려 비과세의 혜택이 없어도 충분히 자생력이 있는 단체에게 비과세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재산이 많은 단체일수록 비과세규모가 커지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

3.3.4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의 취약성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그 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당한 시행이 이루어졌을 때에 대비하여 적절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그러한 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운용방식에는, 비과세·감면만 규정하고 사후 추정규정이 없는 경우와 사후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사후관리를 행하는 취지는 단순히 추정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 허용하였던 비과세 감면의 혜택을 부정하고 조세수입을 늘리는 데 있지 않고, 비과세 및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은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일정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

3) 지방세법 시행령 제 78조의2와 제79조

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한 세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방세의 부과, 징수, 세무조사 등 우선적으로 처리할 업무가 많아 실제로 비과세 및 감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사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현실이다.

Ⅲ.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제도 개선방안

1.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단계적 과세전환

1.1 비과세규정을 감면규정으로 규정 변경

현행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지방세법 제 107조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경우는 취득세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법제정 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운영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특수성과 자율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에 관하여는 비과세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감면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특성 있게 규정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의 분권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인 재정자주권의 신장을 제고하고 또는 감면조례의 개정 등을 통하여 보다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가능 할 것이다.

1.2 단계적 일몰제도⁴⁾의 도입

조세저항과 부작용을 감안하여 종교단체의 비과세 및 감면 조항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줄여서 과세공평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초 1년은 전액감면, 2년 75% 감면, 3년 50% 감면, 4년 25%감면, 5년 100% 과세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기간이나 감면율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대상에 따라 건축물 재산세 과세 시에는 용도지수, 과세표준가감 등을 일반 영업용 건축물과 구분 적용한다든지, 토지분 재산세 과

4) 일몰법, sun-setlaw :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법

세 시에는 세율을 분리과세 등으로 달리 적용하는 등, 과세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1.3 종교단체 고정자산의 감면대상 명확화가 필요

당해 부동산의 용도가 당해 종교시설의 고유한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당해 종교시설이 사실상 취득하거나 사실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규정은 과세 실무상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경내 건물과 경내지, 보육용, 박물관용 외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세법에 정한 조건에 충족한 경우만 자격을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표 7>과 같이 각 종교에 따라 개별적 과세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

<표 7> 과세대상의 열거 예시

구 분	범위 및 대상	비 고
건축물	-도시 내 〇〇m ² , 도시 외 〇〇m ² 로 한정 -종교시설 중 사택 및 기숙사만 해당	-과밀 지역 내에 증·개축 시 종과세
대 지	-건축물 면적 1.3 ~ 1.5배로 한정	
임 야	-사찰이나 처소 면적 3배로 한정	
용 도	-주예배당, 보육, 교육, 병원 등으로 규정	
:	:	:

2 비과세 · 감면 추징제도 보완

현행 지방세 감면 추징제도의 문제 중 납부기한 도래 여부의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는 수많은 감면대상의 추징사유 만료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표 8>와 같이 만료시점에서 담당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표 8> 비과세 · 감면 추징 제도 보완

	방 법	비 고
전산관리법	-납부기간 도래 30일전 팝업창 생성 -팝업창 연계 전사적으로 감면 대상에게 소명자료 관련 통보	-자동화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 -전산화 과정의 시간 소요
자진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한 자진신고제도로 정착	-자료 미제출 또는 해태시 제재 -현장방문 등 인력 및 시간소진

3. 비과세·감면 규정을 재원보조로의 종교단체에 지원 방안

재원보조로의 전환방안은 현재의 비과세대상을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세를 징수 하고, 2차로 중앙정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재원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보조를 하는 이유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단체에 현재 비과세액에 상응하는 재원을 증액교부하면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재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될 경우, 그 혜택이 보다 더 직접적이고 가시화되어 세금은 당연히 납부되어야 한다는 납세의식의 고취와 함께 당해시설 및 단체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 준다는 인식을 깊이 심어줄 수 있으므로 해당종교단체의 책임의식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정책의 구현수단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의사에 무관하게 비과세제도를 시행하여 조세수입 없이 모든 행정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강요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 비과세액에 상응하는 재원을 보조금 형식이든 그 외 어떤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의 조세수입을 각 지방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출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예산계상 시 매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대상별 우선순위의 책정도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정책의 부각 및 이의 달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표준화된 회계기준 도입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기업회계에 있어서의 수익과 비용의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차이, 이익 혹은 잉여금의 개념은 고려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각 종교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거나, 자체의 규정을 제정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는 것은 종교법인의 특수 환경에 맞지 않으며 통일된 종교 인에 대한 회계기준이 없어 지방세상 과세 적부심의 정책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한다. 따라서 종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혹은 표준화된 종교법인의 회계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2009년 감면조례에 대한 표준안 정비로 인하여 345,243백만원의 과세전환액이 발생하였다. 이는 결국 다양한 종교단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표준화로 인한 과세전환액이 상당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표 9>감면조례 표준안 정비에 따른 과세전환액(2009년)

구 분	건 수	과세전환액(백만원)
감면조례 표준안 정비 (2009년)	12	345,243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10

V. 결 론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을 비롯한 각종 조세상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여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함께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면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이 재산관련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관련 조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처럼 각종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을 가지고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예: 부동산의 허가 및 등기자료)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종교단체 지방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재무보고에 많은 취약점으로 일관성 있는 재무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종교단체의 재무적 분석자료를 제시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1. 국세청(2012), “공익법인세무안내”
2. 부산시(201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3. 김명돌(2009)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4. 김복원(2006),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성규(2009), “종교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6. 김완석·송쌍준·박훈·유태현(2005),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7. 국중호(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8. 김완석, 송쌍중, 박훈, 유태현(2005), “지방세·비과세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9. 김의호(2005), “종교단체(법인)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범위,” 지방세연구 3월호, 한국지방세연구회
10. 광윤직(2011), “민법총칙,” 박영사
11. 박상봉, 김명희(2007),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개선안” 경영정보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
12. 박정우, 육윤복, 윤주영(2004),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 21권 제 1호
13. 오상희(2012), “회계의 투명성과 CSR이 재무적 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 정보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
14. 오정우(2002), “종교법인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5. 이상현(2004),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6. 이신남(2005), “교회회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경영컨설팅 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8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17. 정갑영(1998),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8. 정대진(2004), “한국의 종교단체에 관한 조세법상 연구,” 동국대 법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 천주석(2004), “공익법인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 한유숙(2005), “개인사찰 건물의 소유권 귀속(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다 54971판결),”대법원 판례해설: 재판연구관 세미나 자료 54호, 법원도서관
21. Bruce R. Hopkin(2005), The Tax Law of Charitable Giving, Third Edition, John Wiley&Sons. Inc
22. Bruce R. Hopkin(2004), The Law of Tax-Exempt Organization, Eighth Edition, John Wiley&Sons. Inc
23. Judy Blazek(2004), Tax Planning and Compliance for Tax-Exempt Organization, fourth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Abstract

A Study on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in Korea

- Proposals for improvement in the systems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under the Local Tax Law -

Park Sang-Bong*

In Korea, religious bodies are being given tax benefits lik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Tax Law. By the way,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tax benefits given to religious bodies and other kinds of non-profit corporations. In other words,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are being made without considering the very nature of the bodies. This is causing lots of problems. Currently, tax supports to religious bodies are mostly focusing on tax items related to their property, considerably diverting from the ultimate purpose and objectives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organizations. This is not also weakening local finance, but also diverting from the basic intent of so-called the induction system that if necessary, tax supports are given, but they have to be minimized. To solve these problems, comprehensive actions need to be taken, for example, reducing tax benefits given to religious bodies' property and motivating the bodies to make a variety of donations like in developed countries. Now, religious bodies should change their consciousness of tax liability that is imposed by the Local Tax Law.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more systematic in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data that are necessary to levy taxes on religious bodies. If required, the government show the data to religious bodies, convincing them to positively fulfil their tax liability without complaint.

This study discusses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existing local tax systems in relation to religious bodies and then propose how to improve the systems. If the systems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under the Local Tax Law can be improved, it would contribute to improve the finance of local autonomous bodies.

Key Words : local tax, religious bodies, tax exemption, tax reduction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Accounting, Dong-Eui, Univ., Busan 614-714, korea. parksb@deu.ac.kr